

제2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2006.9.4 ~ 9.15(12일간)

# 專門委員 檢討報告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企劃行政委員會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專門委員 檢討報告書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6년 8월 28일

나. 회부일자 : 2006년 8월 29일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된 인력과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관련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616명⇒ 2,621명(5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 1,460명→ 1,465명(증 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증감내역 : 일반직 5명 증원
  -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 : 3명(3급 1, 3~4급 1, 4급 1)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기능 보강 : 2명(5급 1, 6급 1)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인력 3명과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관련 기능 보강 2명 등 공무원 정원을 5명 증원하는 것으로
-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직위는 3급 경제통상국장, 3급~4급 기획관, 4급 자치연수원 수석교수이며, 충청북도에는 이번에 지방직으로 전환된 3명외에도 6명의 국가공무원이 있음.
  - ※ 기획관 국가 4급→ 지방 3급~4급, 수석교수 국가 5급→지방 4급으로 상향조정되었음.
- 지방분권화 시대에 자치인사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으로 보직되고 있는 6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200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으로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5년간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따라서 우리도에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기능을 보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